

평창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8
----------	-----

제출년월일 : 2012.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종이수입증지 사용 불편 및 위변조 등 비리를 사전 방지하고 민원 편의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전자수입증지를 도입 사용토록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수입증지 사용 조항 신설(안제5조제1항내지제5항)

-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수입증지 사용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전자수입증지 사용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자수입증지 사용

나. 상세내용

구 분	대상민원서류	기능 주요 내용	기능 주요 화면																																
무인민원 발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 지적,토지, 건축물 차량 등 7개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증지 전자이미지 시스템에 등록 관련 증명서 발급시 전자증지 자동 인쇄 ※ 발급건수·매수를 집계·정산 	<table border="1"> <thead> <tr> <th>선택</th> <th>제출명종류</th> <th>신청건수</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input checked=""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결과서(식품-일반)</td> <td>1</td> <td>1,5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결과서(유형)</td> <td>0</td> <td>1,5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결과서(일반급식소)</td> <td>0</td> <td>1,5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서(간염표본)</td> <td>0</td> <td>2,9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서(간염표본)-영문</td> <td>0</td> <td>2,9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서</td> <td>0</td> <td>1,5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서-영문</td> <td>0</td> <td>1,500</td> </tr> </tbody> </table> 	선택	제출명종류	신청건수	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식품-일반)	1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유형)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일반급식소)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간염표본)	0	2,9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간염표본)-영문	0	2,9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영문	0	1,500
선택	제출명종류	신청건수	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식품-일반)	1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유형)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일반급식소)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간염표본)	0	2,9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간염표본)-영문	0	2,9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영문	0	1,500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증지 전자이미지 시스템에 등록 관련 증명서 발급시 전자증지 자동 인쇄 ※ 발급건수·매수를 집계·정산 	<table border="1"> <thead> <tr> <th>선택</th> <th>제출명종류</th> <th>신청건수</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input checked=""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결과서(식품-일반)</td> <td>1</td> <td>1,5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결과서(유형)</td> <td>0</td> <td>1,5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결과서(일반급식소)</td> <td>0</td> <td>1,5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서(간염표본)</td> <td>0</td> <td>2,9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서(간염표본)-영문</td> <td>0</td> <td>2,9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서</td> <td>0</td> <td>1,5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서-영문</td> <td>0</td> <td>1,500</td> </tr> </tbody> </table> 	선택	제출명종류	신청건수	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식품-일반)	1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유형)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일반급식소)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간염표본)	0	2,9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간염표본)-영문	0	2,9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영문	0	1,500
선택	제출명종류	신청건수	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식품-일반)	1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유형)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일반급식소)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간염표본)	0	2,9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간염표본)-영문	0	2,9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영문	0	1,500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목별과세증명서 공직자선거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증지 전자이미지 시스템에 등록 관련 증명서 발급시 전자증지 자동 인쇄 ※ 발급건수·매수를 집계·정산 	<table border="1"> <thead> <tr> <th>선택</th> <th>제출명종류</th> <th>신청건수</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input checked=""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결과서(식품-일반)</td> <td>1</td> <td>1,5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결과서(유형)</td> <td>0</td> <td>1,5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결과서(일반급식소)</td> <td>0</td> <td>1,5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서(간염표본)</td> <td>0</td> <td>2,9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서(간염표본)-영문</td> <td>0</td> <td>2,9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서</td> <td>0</td> <td>1,500</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건강진단서-영문</td> <td>0</td> <td>1,500</td> </tr> </tbody> </table> 	선택	제출명종류	신청건수	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식품-일반)	1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유형)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일반급식소)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간염표본)	0	2,9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간염표본)-영문	0	2,9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영문	0	1,500
선택	제출명종류	신청건수	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식품-일반)	1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유형)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결과서(일반급식소)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간염표본)	0	2,9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간염표본)-영문	0	2,9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	0	1,500																																
<input type="checkbox"/>	건강진단서-영문	0	1,50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평창군공고 제2012-604호(2012.6.29.~2012.7.18.)

제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감사실-14908호 '12.7.9)

(3) 부패영향 평가 : 심사대상 아님(기획감사실-14907호 '12.4.4)

(4) 성별영향 분석평가 : 영향없음(주민생활지원과-33547 '12.8.3)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1]

평창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창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각 계기와 기기 및 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하는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증지 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평창군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 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군이 도의 증지를 지급받아 보관할 경우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8조(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 ① 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1항에 따른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이 곤란할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공무원 중 판매책임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0조(계약의 신청 및 고시) ①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를 교부받을 군명을 군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
다.

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
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1에 따른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신의성실을 좇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증지를 성실히 판매
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인의 명의 및 위치 변경, 판매폐지) 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2일 전에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13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장 금고는 제8조제
3항에 준하여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5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지 취급공무원이 판매할 증지를 출납 받으려는 때에도 인수기관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고에서는 제3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책임) 판매인이 증지를 더럽히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8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지급한다. 다만, 계기사용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은 금고소재지에서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수익금 관리) ① 직장금고에서 증지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상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으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증지 진위조사) ①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제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와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4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판매인 승계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계약의 해지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환매하여야 한다.

제25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 중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어 판매하기 부적당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

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확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환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6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출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 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 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표 찰

평창군수입증지판매소	
주 소 :	
성 명 :	

3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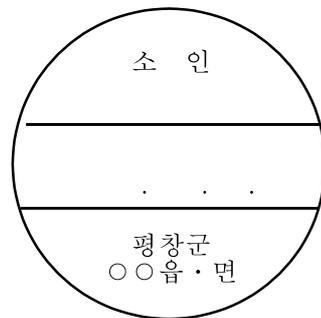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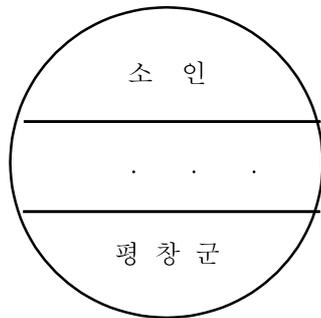
80cm

[별표 2]

소 인 규 격 (지름 2.5cm)

군

읍·면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위치) 변경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계 약 번 호		제 호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기 지 정 자	판매소 위치		명 의 (위치) 변 경 요 구 자	판매소 위치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명의(위치) 변경사유					

위 사유로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 신고서

계약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인	소 재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 년 월 일			
신 고 사 항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출납 · 보관
수입증지매수 (교환 · 환매) 청구서**(제15조제1항 관련)

권종	구분	재 고 량		청구(교환,환매)량		공제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 고 (사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출납 · 보관 · 교환 · 환매) 청구합니다.

청구인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제15조제3항 관련)

No.

수입증지급(교환·환매)원부

판매인	주소	
	성명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계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발행 년 월 일		

No.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계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출납원
평창군 금고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수입 중지 요금 계기 관리 대장(제19조제2항 관련)

월 일	카드 번호	금일까지 카드금 액 (A)	전일까지 카드금 액 (B)	금일결손 (C)		금 일 발 행 (A-B-C)		결 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취급자	담당	과장

※ 조정카드는 1일 1매를 원칙으로 한다.

[별첨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이상진
연락처	(033) 330-2270

[별첨 2]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